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3. 16 선고 2020가단95910(본소), 2022가단78711(반소) 판결
[공사대금 · 지체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반소피고) A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강

담당변호사 이종현, 정우순

승계참가인 1.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C

2. 주식회사 D

3. 주식회사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헤

담당변호사 고혜련, 김세현, 이승현, 임현진, 장정안, 황민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재상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F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퍼스트

담당변호사 정태상

변 론 종 결 2023. 2. 9.

판 결 선 고 2023. 3. 16.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승계참가인들에게 20,397,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4.부터 2023. 3.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승계참가인들의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승계참가로 인한 비용은 그 중 9/10은 승계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1. 본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0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승계참가인 B 주식회사의 승계참가취지

피고는 승계참가인 B 주식회사(이하 ‘제1승계참가인’이라 한다)에게 31,747,915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D의 승계참가취지

피고는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D(이하 ‘제2승계참가인’이라 한다)에게 58,272,447원 및 이에 대하여 제2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E의 승계참가취지

피고는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E(이하 ‘제3승계참가인’이라 한다)에게 449,481,210원 및 이에 대하여

제3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200,6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① 피고는 2019. 11. 28.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피고의 G공장 신축공사 중 철거 및 옹벽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를 9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토사반출을 포함시켜, 공사대금을 1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였다.

② 피고는 2020. 1. 9.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피고의 나머지 G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를 8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③ 원고와 피고는 2020. 8. 21.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은 모두 지급하였고 이 사건 제2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중 101,200,000원은 아직 지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피고가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원고에게 위 101,2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를 하고서, 그러한 내용의 정산합의서(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④ 피고는 2020. 9. 2. 파주시장으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제2공사계약에 따라 건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⑤ 제1승계참가인의 신청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21. 5. 12. 위 법원 2021타채168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의 판결, 결정, 명령, 조서 등에 의한 채권 등 중 31,747,915원 부분을 압류하고 제1승계참가인에게 그에 관한 추심권을 부여하였고, 위 결정은 2021. 5.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⑥ 제2승계참가인의 신청에 따라 같은 법원은 2021. 8. 9. 위 법원 2021타채4565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의 판결, 결정, 명령, 조서 등에 의한 채권 등 중 58,272,447원 부분을 압류하고 제2승계참가인에게 그에 관한 추심권을 부여하였고, 위 결정은 2021. 8.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⑦ 제3승계참가인의 신청에 따라 같은 법원은 2023. 1. 2. 위 법원 2022타채5705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의 판결 등에 의한 채권 등 중 449,115,960원 부분을 압류하고 제3승계참가인에게 그에 관한 추심권을 부여하였고, 위 결정은 2023. 1. 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나 제1, 2호증, 갑라 제5, 6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사용승인일인 2020. 9. 2.로부터 15일이 되는 2020. 9. 17.까지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라 이 사건 제2공사계약의 잔존대금 101,200,000원 및 이에 대한 법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정산합의는 피고의 공박으로 인한 법률행위로 무효이거나 원고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이를 취소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정산합의가 피고의 공박 등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이거나 원고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정산합의를 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준공 필요 서류를 2020. 8. 27.까지 제출하고 이를 어길 시 이 사건 정산합의를 무효로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준공 필요 서류의 일부를 2020. 8. 28.에야 보냈으므로, 이 사건 정산합의는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정산합의서에 “※ 준공서류 미제출 8월 27일 미제출 시 합의서는 무효처리함”이라고 기재하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기한을 어겼다는 점에 부합하는 을 제8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지 않고, 을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

가. 하자 보수 및 미시공 추가시공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

피고는, 원고가 별지 하자 및 미시공 내역의 기재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제2공사계약에 따라 시공한 건축물에 하자 및 미시공 부분이 있고, 이에 대한 보수 또는 추가시공을 위하여 같은 내역의 기재와 같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감정인 H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별지 하자 및 미시공 내역 중 하자 부분 순번 1 내지 4, 6 내지 8, 10, 11의 각 기재와 같은 하자 및 미시공 부분 순번 1, 2, 4 내지 8의 각 기재와 같은 미시공이 존재하는 사실과 이러한 하자를 보수하거나 미시공 부분을 추가시공 하는 데에 그 각 항목의 비용 난 기재 금액이 소요되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자 및 미시공으로 인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그 보수나 추가시공을 요구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또 당초 원고가 공사금액으로 견적한 금액이 얼마인지와 무관하게, 하자의 보수 및 미시공 부분의 추가시공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각 하자 내역의 보수 비용 22,537,148원과 각 미시공 내역의 추가시공 비용 58,265,592원을 더한 80,802,740원 및 이에 대한 법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별지 하자 및 미시공 내역 중 하자 부분 순번 5, 9의 각 기재와 같은 공사와 미시공 부분 순번 3, 9의 각 기재와 같은 공사가 이 사건 제2공사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관련하여 원고는,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정산합의에서 피고가 이 사건 정산합의로 약정한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 및 미시공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3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제2공사계약의 특약사항 제6항으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하자이행에 대한 요구나 청구는 공사비를 완납하였을 경우에 할 수 있고, 공사비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 수급인은 하자이행에 대한 요구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라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약정이 하자에 대한 직접적인 보수의 청구를 넘어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도 미친다고 볼 자료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지체상금

피고는, 이 사건 제2공사에 관하여 지체상금 약정이 있었으므로,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지체기간 125일에 대한 지체상금 114,125,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제2공사의 완공예정일을 2020. 4. 30.로, 지체상금율을 1일 1000분의 1로 각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제2공사에 관한 사용승인일이 2020. 9. 2.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0. 8. 21. 이 사건 정산합의가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정산합의를 하면서 ‘이 사건 정산합의서 작성 이후 원고와 피고는 어떠한 사유로도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할 수 없음’을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정산합의로써 지체상금을 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지체상금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상계

피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하는바, 양 채권은 위 2020. 9. 17.(승계인들의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이다)에는 상계할 수 있었으므로, 위 날을 기준으로 양 채권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20,397,260원(= 101,200,000원 - 80,802,740원) 남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상계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397,2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20. 10. 24.부터의 법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다220178 판결 등 참조), 이 경우에도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또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송계속 중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51510 판결 등 참조).

제1승계참가인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상 피압류채권액은 31,747,915원이고, 제2승계참가인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상 피압류채권액은 58,272,447원이며, 제3승계참가인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상 피압류채권액은 449,115,960원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각 피압류채권액은 그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각 제3채무자, 즉 피고에 대한 해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일을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 즉 '20,397,260원 및 이에 대한 2020. 10. 24. 이후의 법정지연손해금'을 초과한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6. 승계참가인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제3채무자가 추심절차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소로써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모든 채권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원고 쪽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같은 조 제2항). 이러한 민사집행법 규정을 적용하여, 각 승계참가인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금액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하는 이 사건에서, 제2승계참가인과 제3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는 실질적으로는 제1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를 통한 추심소송에 대한 공동소송참가의 취지로 선택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승계참가인들의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 전체에 미치므로, 추심권자인 승계참가인들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 전액을 공동으로 추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¹⁾ 따라서 피고는 승계참가인들에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액 20,397,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3.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제3,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되었지만, 이는 피고의 상계로써 소멸하였다.

8. 결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본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승계참가인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승우

별지

1)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기하여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를 대신하여 추심의 목적에 맞도록채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특히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야 하므로, 추심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의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채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채권을 행사하고, 나아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으면 지체없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함으로써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들이 배당절차에 의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법리는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에 임의로

응하지 아니하여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후 얻어낸 집행권원에 기하여 제3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결과 취득한 추심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2007. 11. 15. 선고 2007다62963 판결 등 참조).